

의안번호	2205619
의 퇴 인	박용갑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28.
추 계 번 호	24F515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할 경우, 세수는 2026년 1,477억원, 2033년 1,477억원 등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총 2조 9,540억원(연평균 3,69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총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2028년 말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2033년까지 세수효과가 발생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·소득세, 2026~2033년

(단위: 억원)

	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	누적	연평균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6조)	법인세	-533	-1,065	-1,598	-2,132	-2,132	-1,598	-1,065	-533	-10,656	-1,332
	소득세	-944	-1,889	-2,833	-3,776	-533	-2,833	-1,889	-944	-15,641	-1,955
	계	-1,477	-2,954	-4,431	-5,908	-5,908	-4,431	-2,954	-1,477	-29,540	-3,69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	○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4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 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조세지출예산서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

-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3년(2022~2024년(잠정)¹⁾) 연평균 감면액 수준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,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
 - －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5년간 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 - －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총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2028년 말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2033년까지 세수효과가 발생한 점을 반영하여 2033년까지의 세수감소 효과를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감면실적 및 추계방법

□ (감면실적) 조세지출예산서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은 다음과 같음

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 숫자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된 숫자임

[표 2]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실적: 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(잠정)	3년('22~'24) 평균 감면액
계	6,080	7,629	8,446	7,385
법인세	2,561	2,788	2,640	2,663
소득세	3,519	4,841	5,806	4,722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계방법)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3년(2022~2024년) 감면액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

○ 1년 단위 환산액: (법인세) 533억원 = 2,663억원 ÷ 5년

(소득세) 944억원 = 4,722억원 ÷ 5년

－ 조세지출예산서상 감면실적은 과거 5년간 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: 법인·소득세, 2026~2032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
'25년 창업중소기업	법인세	533	533	533	533	533	—	—	
	소득세	944	944	944	944	944	—	—	
'26년 창업중소기업	법인세	—	533	533	533	533	533	—	
	소득세	—	944	944	944	944	944	—	
'27년 창업중소기업	법인세	—	—	533	533	533	533	533	
	소득세	—	—	944	944	944	944	944	
'28년 창업중소기업	법인세	—	—		533	533	533	533	533
	소득세	—	—		944	944	944	944	944
계		1,477	2,954	4,431	5,908	5,908	4,431	2,954	1,477

나. 추계결과

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시, 법인·소득세 수는 2026년 1,477억원, 2033년 1,477억원 등 2026년부터 2033년까지 8년간 총 2조 9,540억원(연평균 3,69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·소득세, 2026~2033년

(단위: 억원)

	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	누적	연평균
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(안 제6조)	법인세	-533	-1,065	-1,598	-2,132	-2,132	-1,598	-1,065	-533	-10,656	-1,332
	소득세	-944	-1,889	-2,833	-3,776	-533	-2,833	-1,889	-944	-15,641	-1,955
	계	-1,477	-2,954	-4,431	-5,908	-5,908	-4,431	-2,954	-1,477	-29,540	-3,693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